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전문가의 참여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개인정보 침해 요인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안 제37조의2)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4.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설계도서의 서명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는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로 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공사의 시공”을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를 “공사의 시공

관리·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기술자”를 “정보통신기술자(특급기술자 중 기술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국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②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 4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1.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학력·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등급변경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20시간
감리원 인정교육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별표 2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20시간

	려는 감리원	
--	--------	--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나. 감리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감리원 인정교육의 중급·초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급·고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신규교육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자 (대행하는 자를 포함)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전	20시간 이상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 전	
	전문교육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수행하게 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20시간 이상

별표 10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1호	100만원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15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2호	150만원
3.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3호	200만원
3의2.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2	300만원
3의3.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3	30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4호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만원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100만원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5호	300만원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	150만원

8.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의2	300만원
9.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의3	300만원
10.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의4	150만원
11.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의5	300만원
12.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의6	300만원
13.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78조제3항제1의2호	100만원
14.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78조제3항제1의3호	
가. 신고사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만원
나. 신고사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100만원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7호	150만원
16.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8호	300만원
17.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2호	50만원
1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9호	1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이하 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영 시행 당시에 대상 건축물등이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세대 수에 따라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4년 8월 18일
나.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5년 7월 18일
다.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6년 7월 18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제3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7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4항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5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u>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u> 2.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의2(설계도서의 서명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경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 기술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 ----- -----. ----- ----- ----- -----.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u>특급감리원(「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로 한정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3장 공사의 시공</u>	<u>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u>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 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u>사업자등록 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 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u>)를 첨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u>(사업자등록 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 -----</u>
1. <u>사업자등록증</u>	1. <u>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 호는 제외한다)</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 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	③ -----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생략)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 기술자

2. (생략)

③·④ (생략)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
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정보통신 기술자(특급기술자 중 기술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

보수·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국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신 설>

②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202-6416